

장애를 가진 학생의 동등한 특별활동 참여

2014 년 5 월, 자료 #CM45.03

1.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도 특별활동에 참여할 평등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활법 제 504 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와 미국 장애인법 제 2 장(Title II of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도, 자신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1, 2}

¹ 이 자료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등 과정 이후의 학생들도 역시 특별활동 교육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² 미국 연방 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34 편 제 104.4 조, 제 104.37 조; 미국법전(U.S.C., United States Code) 제 42 편 제 12101 조;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인권 사무소(Office of Civil Rights). (2013 년 1 월 25 일). 친애하는 동료의 편지(Dear Colleague letter), 특별활동 교육 과정(Extracurricular Activities). 출처는 인권 사무소 편지.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301-504.pdf>.

2. 장애를 가진 학생도,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회계 감사원(GAO,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2010 년도에 완성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각 주와 학교는 연방법에 의하여 특별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신체적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 학교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 학생의 비율은 장애가 없는 학생의 참여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³

3.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학교 체육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이 따를 수 있는 안내가 있습니까?

2011 년에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체육 교육의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교육기관들에 실질적인 제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각 주와 학교들에 있어 주요 사안인 이 문제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⁴ 2013 년에 미국 교육부 산하 민권 사무소(OCR, Office of Civil Rights)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특별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학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상세한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⁵

³ 미국 회계 감사원(GAO,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0 년 6 월) *장애가 있는 학생: 더 많은 정보와 지침이 체육 교육 및 운동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Students with Disabilities: More information and guidance could improve opportunities in physical education and athletics)*. (자료 번호. GAO 10-1519)의 출처는 GAO 보고서입니다. 데이터 베이스 이용: <http://www.gao.gov/assets/310/305770.pdf>.

⁴ 미국 교육부, (2011 년 8 월).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체육 교육 및 특별 활동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만들기 (Cre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Physical 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Athletics)*. 데이터 베이스 이용: <http://www2.ed.gov/policy/speced/guid/idea/equal-pe.pdf>.

⁵ 미국 교육부, OCR. (2013 년 1 월 15 일), 2013 년 친애하는 동료의 편지 2013 및 2013 년 12 월 16 일자 프란치스코 네그론 주니어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Francisco Negron, Jr). 데이터 베이스 이용:

4. 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별활동 교육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기관에서 보장해 줍니까?

교육부 산하의 민권사무소(OCR, Office of Civil Rights)가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 제 504 조와 제 2 편의 시행을 관장합니다. OCR은 장애를 비롯하여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이나 연령에 근거하여 이러한 법규 및 기타 법규의 차등 적용을 조사합니다. OCR이 시행하는 민권법은 모든 주의 교육기관, 초등 및 중등학교, 차터 스쿨, 단과 대학 및 종합대학, 직업 학교, 영리 학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립 직업 재활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범주는 체육 및 기타 특별활동, 학습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처우, 훈육, 레크리에이션, 체육 교육을 포함합니다.

5.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체육 및 기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이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미국 회계 감사부와 미국 교육부는 최근에, 특별활동의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 및 사회성 면에서 중요한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⁶ 전국 학교대항 운동 관리자협회(National Interscholastic Athletic Administrators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을 하며, 대학에 진학하여 더 많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합니다.⁷

6. 어떠한 특별 체육활동이 비차별 법규에 의해 보장됩니까?

제 504 조와 제 2 편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특별 체육활동은,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클럽, 교내, 또는 학교 대항 (예를 들면, 신입생, 후보팀, 대표팀) 운동을

http://chinniandmeuser.com/uploads/3/2/7/4/3274563/december_2013_ocr_clarification_re_separate_athletic_opportunities.pdf.

⁶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체육 교육과 특별활동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만들기(Cre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Physical 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Athletics). 데이터 베이스 이용:

<http://www2.ed.gov/policy/speced/guid/idea/equal-pe.pdf>.

⁷ Active Policy Solutions, 질문과 답변: 스포츠에 있어서의 장애에 관한 친애하는 동료의 편지(Q and A: Disability in Sport Dear Colleague Letter), <http://www.niaaa.org/assets/OCR-Dear-Colleague-Q-and-A-2-15-13.pdf>.

포함합니다.⁸ 운동과 더불어, 특별활동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공 교육 기관의 지원을 받는 특별 취미활동 그룹이나 클럽도 포함됩니다.⁹

7. 장애가 있는 학생이 비학습 분야 및 특별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유치원 및 초등, 중등,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비학습 분야 및 운동을 포함하는 특별활동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¹⁰

8. 특정 장애를 가진 학생이 운동이나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장애에 관한 가정이나 일반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는, 일반적인 또는 특정 장애에 관한 일반화나 가정, 편견,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교육청도 또한, 어느 한가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일반화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장애를 가진 어느 학생이 특정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도,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진 다른 학생은 그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교육법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의하면, 지역 교육청과 기타 공공 기관은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이 비학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각기 자신의 개인화된 교육 프로그램(IEP,

⁸ OCR의 친애하는 동료의 편지.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301-504.pdf>.

⁹ 34 CFR 제 104.37(a)(2)조; 34 CFR 제 300.107 조.

¹⁰ 34 CFR 제 104.31 조.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에 따라 결정된 보조 기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¹¹

10. 운동 및 기타 비학습 특별활동이 학생의 IEP 에 기재되어야 합니까?

학생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며, 그리고/또는 비학습 및 기타 특별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조 기재나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와 지원은 해당 학생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¹² 코치나 프로그램 운영자가 해당 아동이 그러한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 없거나, 해당 아동을 참여시키기 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참여가 IEP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11. 운동 코치가 IEP 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서비스나 지원, 목표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나 지역 교육청 대변인은 코치가 IEP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12.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이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이 제공할 책임이 있는 관련 서비스나 보조 기재, 또는 기타 지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IEP 팀은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서비스, 보조 기재 및 기타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인 행동 지원 계획; 경쟁이나 팀 활동과 관련된 협동이나 사회적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상담; 연습 중에 행동 능력의 본을 보여주거나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정신 건강 재활 서비스; 반복, 복잡한 가르침을 여러 단계로 나누거나, 능력을 발달시키시 위해 개인화된 설명이나 코칭을 제공, 아동이 치료를 받으러 갈 수

¹¹ 34 CFR §300.117

¹² 34 CFR 제 300.320.(a)(4)조

있도록 하기 위해 연습 참여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등을 포함한 코칭 방법의 수정.

13.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학생의 관련 기술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교육청은 특정 또는 경쟁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의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청은 장애가 있는 학생 각자의 필요를 합당한 한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학생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특별활동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교육청이, 학생이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당한 수용 방안을 강구하거나, 방침이나 연습, 절차를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화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 학교는 어떻게 수정이나 수용이 합당한 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별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이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청된 수정이 특별활동 운동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거나,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불공평한 기득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는 한, 그 수정이나 수용은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¹³

15. 교육 기관은 개별화된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권 사무소는 최근에, 개인화된 조사는 필요한 때에 학생이 특별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합당한 수정이나 지원, 서비스가

¹³ 2013년 1월 25일 자, OCR의 친애하는 동료의 편지.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301-504.pdf>.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직원에 의해서 제때에 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¹⁴

16. 학생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장애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활동 중에 일어나는 괴롭힘을 포함하여 학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장애에 근거한 괴롭힘이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하고 철저하며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괴롭힘과 그로 인한 결과를 해결하고, 괴롭힘의 재 발생과 대상 학생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는 일을 포함합니다.¹⁵

17. 동등한 기회란 다른 학생들은 시험을 거쳐야 하는 운동 팀에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에게는 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졌지만 자격을 갖춘 학생 각자의 필요를, 합당한 한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학생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특별활동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교육청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시행, 또는 절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가 그 수정으로 인하여 특별활동 운동 프로그램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불공평한 기득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8. 장애에 근거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부터 학생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은 학교가 속한 교외

¹⁴ OCR 의 프란치스코 네그론 주니어 (Francisco Negrón, Jr.).

http://chinniandmeuser.com/uploads/3/2/7/4/3274563/december_2013_ocr_clarification_re_separate_athletic_opportunities.pdf.

¹⁵ 다음의 사이트에서 2010 년도 친애하는 동료의 편지 참조:

<http://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010.html>.

연합이나 기타 운동 협회, 단체, 클럽 또는 리그의 규정이나 조건에 의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OCR은 학교는 장애에 근거하여 학생의 참여를 금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어떤 협회나 단체, 클럽, 리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연방 정부의 차별 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¹⁶ 학교는 그러한 규정과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협회들과도 협조해야 합니다.¹⁷

¹⁶ OCR 의 2013 년 1 월 25 일자, 친애하는 동료의 편지.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letters/colleague-201301-504.pdf>.

¹⁷ 위와 같은 출처.

CalMHSA 이 시행하는 예방 및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 Act) (제 63 호)에 의거하여 카운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제 63 호는 이전에 취약계층에 속했던 사람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과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신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귀하의 의견을 전해 주십시오.

영어: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4/index.html>

스페인어: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5/index.html>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재정지원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단체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국 (CalMHSA, 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은 개인과 가족, 커뮤니티의 정신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카운티 정부의 기관입니다. CalMHSA 가 시행하는 예방 및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서비스법제 63(Mental Health Services Act [Prop 63])호에 의거하여 카운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제 63 호는 이전에 취약계층에 속했던 사람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과 기반을 제공합니다.



WELLNESS • RECOVERY • RESILIENCE

